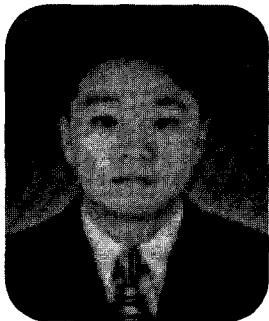


일본지식재산 정책수립의 최근동향



김 승 군 주임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I. 서 론

과학기술, 발명 등이 과학자, 발명자에 의해 창조, 발명되고 이러한 기술 등이 권리화되고 활용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pro-patent 정책의 추진으로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게 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식재산을 축으로 베를경제 이후 침체된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2월 4일 제154회 국회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施政方針演説에서 “연구활동 및 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여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知的財産戦略會議」를 창설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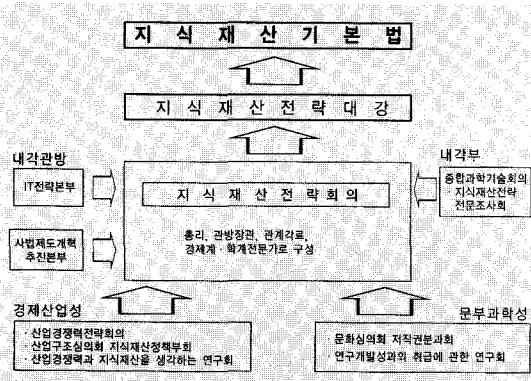
이에 따라 총리가 직접 상기 지식재산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02년 7월 3일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정책으로 「知的財産戦略大綱」을 발표하였고, 동년 11월 27일 제155회 국회중의원에서 「知的財産基本法」이 통과되고 동년 12월 4일에 법률 제122호로 공포되었다.

〈그림 1¹⁾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일단 후술하는 지식재산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이 지식재산전략회의가 내각총리대신하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식재산 전국의 형성에 관한 시책에 많은 행정기관 등이 관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중점적인 시책을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러한 일본의 지식재산정책을 둘러싼 개혁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笹島 富二雄 知的財産権に關する最新の重要な動き, パテント(vol.55), 2002. 2. 80頁.

2) 知的財産戦略會議, 知的財産戦略大綱, 2002. 7. 3. 15頁.



(그림 1)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도

II.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시스템

1. 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수립을 둘러싼 최근의 활동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의 정책이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또한 지식재산은 그 자체만으로 보다는 과학기술정책 또는 산업진흥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부처에 대해 개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집행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결정은 내각(각의)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되고 있다. 상위레벨인 각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政策大綱 혹은 지침은 하위 레벨인 성청별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는 상하 연계체계를 가지고 있다.

2001년 1월 6일 일본은 새롭게 정부조직(1부 12성청)을 개편하였는데 특히 내각에 「내각부」를 신설하고 복수의 성청이 관계하는 문제에 대해 각 성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정부내 정책의

종합조정을 행한다. 내각관방의 기능을 강화해 총리의 리더쉽을 지지하도록 했으며, 중요과제에 관하는 대신 레벨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명담당대신(과학기술정책담당관)을 배치하고 내각부본부에는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로 종합 과학기술회의 등을 두어 정부내외의 뛰어난 인재의 지혜를 결집하고, 국정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이하 내각부를 포함한 일본정부부처의 지식재산 정책 형성에 영향을 행사하는 정부부처내 기구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한다.

2. 내각부

내각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수의 성청이 관계하는 문제에 대해 각 성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로부터 정부내 정책의 종합조정을 행하는 곳으로, 「내각부본부」에 「종합과학기술회의」를 두고 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내각총리대신 및 내각을 보좌하는 “지혜의 장”으로서 일본전체의 과학기술을 조망하면서 각 省보다 높은 위치에서 종합적·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을 행할 목적으로 2001년 1월에 内閣府設置法(1999년 법률 제89호)에 따라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로 내각부에 설치되었다. 동 회의에는 7개의 조사회가 있는데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응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보,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에 대해 조사·검토를 행할 목적으로 「지식재산전략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있다. 동조사회는 井村裕夫 종합과학기술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6월 13일에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중간

정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전략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지식재산정책의 模倣·防衛라고 하는 방어적 자세로부터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의 확보·활용에 전략적·적극적인 대응 자세로 전환한다.

둘째, 독창적인 발명의 창조, 보호, 활용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제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3.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지식재산정책자문기구로서 ①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② 産業競爭力戰略會議, ③ 産業競爭力과 知的財産을 생각하는 研究會를 두고 지식재산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1) 개요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6조와 제7조에 근거 2001년 1월 6일에 설치되었다. 산업구조심의회는 10개의 분과회와 9개의 部會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지식재산정책 부회는 종래 「공업소유권심의회」의 정책심의기능을 산업구조심의회에 통합한 것으로 특허·상표 등의 공업소유권제도의 본연의 모습, 부정경쟁의 방지 등,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조사심의를 하는 기관으로서 2001년 1월 15일에 설치되었으며³⁾,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정책, 지식재산제도의 국제조화 등 지식재산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심의한다.

2) 구성

지식재산정책부회는 ① 법제소위원회, ② 분쟁처리소위원회, ③ 부정경쟁소위원회, ④ 특허제도소위원회, ⑤ 경영시장환경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원회는民間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3) 각 위원회의 활동

▣ 법제소위원회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보호대상의 등장, 전자상거래 등 네트워크상의 경제활동의 발전 등에 대응하는 보호대상의 등장, 전자상거래 등 네트워크상 경제활동의 발전 등에 대응한 특허법·상표법 등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한다.

▣ 분쟁처리소위원회

일본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적 경쟁체제 속에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지식재산의 창조, 권리화, 활용의 촉진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처리 제도의 확립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심판제도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처리제도의 첨모습에 대해 심의한다.

- 심판제도의 검토(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등)
- 심판제도와 침해소송과의 적절한 연계(심판제도와 침해소송과의 정보교환 등을 검토)
- 지식재산소송 관계(증거수집절차, 손해배상절차)
- ADR의 확충(判定의 검토) 등

3) 소관부서는 경제산업성 산업정책국 지식재산정책실, 특허청 특허제도개정심의실.

□ 부정경쟁소위원회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져감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도 ① 원고의 구제조치 강화, ②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③ 인터넷화에 대응한 개념규정의 검토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①과 ③에 대해서는 특허법, 상표법 등에 있어서는 2002년까지 이미 필요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②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전략대강에 있어서 민사·형사에 걸쳐 검토를 진행, 2003년 정기국회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법안을 제출하도록 제언되었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개정에 필요한 검토를 행하게 한다.

- 원고의 구제조치 강화(피해행위의 입증용이 성 및 손해액의 입증 용이화를 위한 규정 정비검토)
- 영업비밀의 보호강화(영업비밀의 보호강화에 관한 민사·형사적인 면 검토)
- 인터넷화에 대응한 규정의 검토(인터넷화에 따른 개념규정의 명확화 검토)

□ 특허제도소위원회

지식재산권전략회의에서 지식재산전략대강의 구체적 실시에 있어, 특허청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심사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단축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일명 「특허전략계획」⁴⁾)을 책정할 방침이다.

이 계획의 책정을 위해 특허 제도개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4) 본 계획은 2003년 7월 8일 공개되어 있다.

- 적정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제도의 본 모습에 대해
- 다양화하는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응하는 실용신안제도의 본 모습
- 첨단기술분야의 특허에 대해(치료방법과 특허)
- 발명자의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제도에 대해

□ 경영·시장환경소위원회

최근 산업경쟁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있어서 산업체의 전략적인 취득·관리·활용의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주재하는 “지식재산전략회의”에서는 ① 경영자의 의식향상과 도전적인 지식재산의 취득·관리를 위한 지침의 제정 ② 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개시 지침의 책정 ③ 특허 등의 유동화 등에 대한 제도 또는 운용의 개선을 검토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아래에 동 소위원회를 설치, 상기의 과제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한다.

- 전략적인 프로그램책정을 위해 참고해야하는 지침
-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 특허 등의 유동화에 대해

나. 산업경쟁력전략회의

일본이 세계일류의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국내의 고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의 활력을 유

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회복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경제산업대신의 사적간담회(제조업계 의견 청취)로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산업을 둘러싼 R&D, 지식재산, 고비용구조의 시정, 고용·인재, 대외시책에 대해 산업계의 대응, 이에 관한 정책적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02년 5월 10일에 발표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가지 전략 - 글로벌 탑(Global Top)」을 지향하는 「기업개혁」과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경영혁신을 향한 5가지의 대응 방안 중 기술개발력·지식재산권의 적극적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 산업경쟁력과 지식재산을 생각하는 연구회

일본이 당면한 상황에 비추어 향후 일본의 지식재산제도에 관하여 일본기업에 의한 전략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단기·중장기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국장과 특허청장의 사적간담회로서 동 연구회가 설치되었다. 동 연구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3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의 전략적 최대화에 관한 워킹그룹, ② 대학·벤처·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워킹그룹, ③ 해외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에 관한 워킹그룹.

동 연구회(위원장 : 阿部博之 東北大學 총장)는 2002년 6월 5일 「산업경쟁력과 지식재산을 생

각하는 연구회」보고서를 공표하였으며 2005년도 까지 대책의 구축, 세계우수의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4개의 전략⁵⁾과 그 세부실천사항에 대해서술하고 있다.

III. 일본정부의 지식재산 종합시책

1. 지식재산전략대강

가. 지식재산전략회의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해 知的財産戦略會議를 2002년 2월 25일 내각총리대신 결재에 의해 구성하였다.

동 회의는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재정정책담당·정보통신기술(IT)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총무대신, 법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및 경제산업대신 및 민간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고 내각총리대신이 개최하는 것으로 2002년 7월 3일 지식재산전략회의(제5회)에서 知的財産戦略大綱을 확정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동 대강을 실시하기 위해 총리는 7월 5일 내각관방에 지식재산준비실을 설치하였고, 지식재산전략회의(제7회)에서 知的財産基本法案을 2002년 10월 16일 제출하였으며, 2002년 10월 18일 지식재산기본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였고,

5) 전략 1 : 지식창조시대를 담당하는 인적기반의 구축
전략 3 : 기업영업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적극적 활용

전략 2 : 대학·연구기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창출·축적
전략 4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2002년 11월 1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11월 13일에 가결, 2002년 11월 2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동 법안을 최종 가결, 성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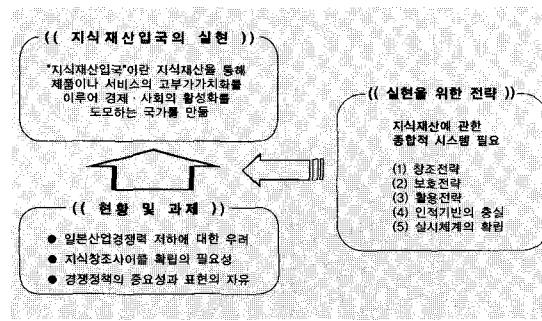
나. 대강의 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2002년 7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주재하는 「知的財産戦略會議」는 그 검토보고서로서 「知的財産戦略大綱」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정부정책에 대한 행동계획임과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총리가 직접 책임자로 지식재산전략을 국가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明治시대(1868-1912) 이래 처음인 것으로 그런 만큼 大綱이 產·學·官의 관계자에게 주는 중량감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식재산전략대강은 서언과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정부의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간결·명료하게 제시하고, 실현 기한 또는 일정까지 기재하고 있다. 전술한 5개의 시책 카테고리에 대해 103개 항목의 실시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92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기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지식재산전략대강의 개요는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지식재산전략대강의 포인트

2. 지식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은 일본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을 근거로 지식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부가가치 높은 사업 활동에 의해 건전하고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인 것을 감안하여, 지식재산의 創造, 保護 및 活用에 관계되어 ① 기본 이념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며 ②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③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전략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평성14년 법률 제122호)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제1조- 제11조)은 총칙으로 동법의 제정목적, 정의규정,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제12조-제22조)은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원론적 당위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제3장(제23조)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추진해야 하는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제24조-제33조)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조직과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4일에 공포되어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지식재산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일명 「지식재산추진계획」이 2003년 7월 8일 지식재산전략 본부⁶⁾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본 계획에는 ① 대학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 ② 특허심사신속화법의 제정, ③ 의료관련행위의 특허보호, ④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설치, ⑤ 모조품대책 등에 관한 근본적 강화, ⑥ 국제표준에 대응한 특허의 취득·활용, ⑦ 콘텐츠비지니스의 진흥, ⑧ 지식재산에 중점을 둔 법과대학원 등의 설치에 대한 시책을 담고 있다.

IV. 결 론

미국은 1980년경부터 당시 쇠락의 경향을 보이는 국제경쟁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특허에 의한 독점권의 보호를 중시하는 일명 pro-patent policy를 명확하게 내세우면서 현재의 미국경쟁력의 토대를 쌓았고, 최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일본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사한 전략을 구사해 나가고 있다. 더구나 국시를 知的財産立國으로 정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지식재산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법을 만들고, 그 추진상황을 체크하는 것을 보면 서, 國是는 고사하고 국정목표에도 채택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싶다.

일본의 이러한 조류는 갑작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지식재산전략회의」, 「지식재산전략대

강」,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는 단기간내(18개월)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 1990년대 말부터 정부차원에서 경제전략을 지식재산권 중심체제로 이미 이행하면서 지식재산입국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 일본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이미 1997년 「21세기 지식재산권을 생각하는 간담회 보고서」를 공표하였고, 당시 간담회 좌장이었던 有馬朗人은 1998년 오부치 내각의 文部大臣으로, 그리고 1980년대 「지가혁명」이라는 저서를 발표한 堀握太一은 동 내각의 경제기획청 장관으로 입각하였다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재산 정책수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이 산업재산권 정책은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저작권은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가 중심이 되어 각부처가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들을 종합 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일본은 부처간 정책조정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 등도 지식재산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일본 지식재산 기본법상의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발행 2003/10

6)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내각에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본부장은 小泉純一郎 총리대신이며, 부분부장 4명, 본부원 13명,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추진계획에서 중요한 기획에 관한 조사심의, 시책의 추진 및 종합조정을 하게된다. 또한 동 본부를 지원하는 내각관방·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국장에 전특허청장(1996년) 荒井壽光씨가 2003년 3월에 취임하였다.

7) 일찍이 일본 초대 특허청장관이었던 高橋是清은 일본 제20대 내각총리대신(수상)이었다.